



# 프랑스 이민법 개정

## I. 서

2007년 11월 20일자 법률(법률 제2007-1631호)은 이민통제와 이민자의 프랑스사회로의 통합 그리고 망명에 대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추가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① 가족의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 요건 강화, ② 영접 및 동화 약정(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확대 ③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들에 관한 규정 개정, ④ 거주증(carte de résident) 규정 개정, ⑤ 망명(asile)규정 개정 등이다.

공식명칭은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l'asile)이고, 내용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과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 II. 입법의 배경과 경과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

른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집중적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그 후 밀어닥친 경기침체와 프랑스 사회에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실업자와 빈민의 처지로 전락하였는데, 그 간 내재되어 있던 갈등 요소가 폭발한 것이 지난 2005년 파리 교외지역에서의 폭동이었다. 당시 폭동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내무장관 Nicolas SARKOZY가 200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민억제를 위한 법제개정은 예견되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이민자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6년에 소위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 를 위한 대폭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이민법 개정은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의 개정과 이번 개정 모두 SARKOZY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입법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짧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① 현정부 들어 신설된 이민·동화·국가정책성·공동발전부장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 Brice HORTEFEU의



- 법률안<sup>1)</sup> 제출 - 2007년 7월 4일
- ② 하원(Assemblée nationale)에서의 가결<sup>2)</sup> - 2007년 9월 19일
- ③ 상원(Sénat) 통과 - 2007년 10월 23일
- ④ 위헌심사청구 - 2007년 10월 25일
- ⑤ 헌법평의회(CC)의 일부 위헌결정<sup>3)</sup> - 2007년 11월 15일
- ⑥ 최종확정법률공포 - 2007년 11월 20일(11월 21일자 관보 제270호에 게재)

### III. 주요 내용

#### 1. 가족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 요건 강화

(1) 가족의 재결합<sup>4)</sup>(regroupement familial)을 위해서는 프랑스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나라에서 비자를 발부 받아야 한다.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청인은 프랑스의 언어와 국가적 가치

에 관한 기본지식을 평가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당국은 현지에서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자는 교육수료증이 나온 이후 발급된다.

(2) 신청인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고정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재정 능력에서 요구되는 금액은 가족 수에 비례하여 최저임금(SMIIC) 이상의 수입이 있음이 최근 12개월 동안의 소득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소득산정 기초에서 사회보장 혜택은 제외된다.

(3) 영접 및 동화 약정<sup>5)</sup>(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배우자 공동으로 체결할 것을 규정하였다.

(4) 비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부재 또는 심각한 의심에 의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정한 경우, 신청인은 유전자

#### \*\*\* -----

- 1) 법률안의 취지는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재결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가족이민(immigration familiale)을 축소하는 대신 종래 7%에 불과했던 경제이민(immigration économique)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총 14조(articles)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이민정책에 관한 권한을 통합하고, ②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려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억제하고, ③ 합법적인 노동이민을 촉진하며, ④ 망명요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 2) 하원에서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수정안에는 윤리적 문제로 논란거리가 되었던 유전자검사(test ADN) 내용이 추가되었다. 호적 등 신분증서가 없거나 외교관에 의해 그 증거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비자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인종차별적 요소라 하여 종교 및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야당에 의해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 3) 이에 앞서 상원을 통과한 수정법률안은 당초 정부제출법안과 하원수정안의 조문번호를 대폭 변경하였는데,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제13조(정부제출법안 제5조의2)와 제63조(하원수정안 제20조)였다. 전자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문 이었고, 후자는 출신국가 통계작성 관련 조항이었다. 주된 쟁점이었던 제13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나, 제63조에 대해서는 프랑스헌법 제1조에 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4) 이것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18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족(18세 이상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을 불러들여 함께 가족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 5) 이 '영접 및 동화 약정'(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검사(tests ADN)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청은 Nante 대심재판소(tribunal de grande instance)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비용부담 하에 실시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 2.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규정

(1)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그 나라에서 프랑스의 언어와 프랑스의 언어와 국가적 가치에 관한 기본지식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당국은 현지에서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자는 교육수료증이 나온 이후 발급된다.

(2)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1년 동안 유효한 체류증(carte de séjour)에 따르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3. 기한이 없는 영주외국인증서 신설

10년짜리 장기거주증(carte de résident)이 만

료된 경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기한이 없는 영구 장기거주증(carte de résident permanente, à durée indéterminée), 즉 영주외국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 4. 공동발전저축계좌 개설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 중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체류증을 보유하고 세법상 주소를 프랑스에 둔 자들에 대해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계좌를 공동발전저축계좌로 하여 최저 3년 동안 일정금액을 동결하면서 신용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망명(asile)규정 개정

(1) 망명요청거부결정에 대해 잠정적 효력정지를 수반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난민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의 감독 기능을 규정하였다.

\*\*\*

- ①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고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 이 약정은 프랑스의 법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민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대상은 프랑스 내 장기체류가 허가된 외국인들 중 ① 가족재결합을 위해 입국한 프랑스인의 배우자와 자녀, ② 프랑스인 가정의 외국인 가족구성원, ③ 16세 내지 18세의 외국인, ④ 법규정에 따른 난민과 그 가족, ⑤ 추가적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닌 단기체류 중 수여 대상자, ⑥ 예술·문화·과학 전문직종의 '능력과 재능'(compétences et talents) 체류중 수여 대상자, ⑦ 가족관계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 받은 자, ⑧ 상시 노동자 등이다.
- ③ 이들은 공민교육과 언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공민교육은 하루 동안 실시되며, 통역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로서 자유, 평등, 박애, 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 프랑스 국적과 시민권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 ④ 언어교육은 400 시간 이내에서 실시되고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시험을 거쳐 프랑스어 기본능력증명서를 따라 한다.



(3) 종전의 난민청원심사위원회를 대신해 망명권재판소(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를 신설하였다.

#### IV. 평가와 전망

‘тол레랑스(tolérance)’, 즉 관용의 나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유명했던 프랑스가 외국인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다년간 지속해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쓸쓸해하고 때로는 규탄시위를 하기도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쟁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러한 입법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국수주의나 인종주의적 편견의 발로이든, 냉정한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든 간에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당

한 입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민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갈등 발생을 피하고 생산적인 미래로도 모하고자 한다는 명분에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장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적발 및 추방 강화나 비자거부횟수의 증가, 난민입국거부 등 문제도 만만치는 않다. 특히나 유전자검사로 인한 윤리성 문제는 계속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볼 만 하고, 이 법의 집행에 관한 향후 추이는 ‘백만 외국인 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